

장애가 있으십니까?



보호소 신청 또는 보호소 찾기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유형의 도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을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이런 종류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 언어 또는 청각 장애
- 운동성 장애(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
- 인지 장애(서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약속을 기억하기 어려운 장애)
- 불안 장애, 우울증, 양극성 장애 또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적절한 편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호소 입소, 평가 또는 위치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서(DHS-13)를 작성하세요.
- 큰 활자체 또는 다른 언어로 된 양식이 필요한 경우, DH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DHS 또는 보호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서류는 온라인 <https://www1.nyc.gov/site/dhs/about/applicants-and-clients-with-disabilities.page>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원에게 신청서를 요청해도 됩니다.
-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서(Reasonable Accommodation Request, RAR)나 편의 제공 서면 요청은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 작성을 완료한 요청서나 서면 요청은 DHS에 제출하거나 보호소 직원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작성한 요청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요청합니다.
- 사본을 받아 요청서를 DHS나 보호소 직원에게 전달한 날짜와 요청서를 전달받은 담당자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 요청 시에는 질환이나 장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에 당국에서 귀하의 요청과 관련한 증빙서류나 추가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DHS 직원, 보호소 직원이나 아는 사람에게 이러한 신청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이 승인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귀하에게 통지하여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청 사항이나 기타 장애 관련 요구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호소 책임자나 케이스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 또한 장애인국(Office of Disability Affairs)에 이메일 DisabilityAffairs@dss.nyc.gov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차별 금지 정책

장애가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DHS에서 귀하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거나 차별 대우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문제 담당 이사
뉴욕시 사회 복지국
장애인 담당실
150 Greenwich Street
New York, NY 10007
팩스: (917) 639-0442
이메일: DisabilityAffairs@dss.nyc.gov

또한 중앙 불만 관리부서(Central Complaint Unit)에 전화 **(718) 557-1399**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한 고충 처리 사무국(Office of the Ombudsman)에 전화 **(800) 994-6494**번으로 문의하거나 사무실에 직접 방문(주소: 109 East 16th Street,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하여 불만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만 신고를 접수할 때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 신고자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세요.
- 일어난 일의 내용, 장소와 일어난 시점을 설명하세요.
- 해당 사안에 관련된 직원의 이름과 직책(아는 경우)을 기재하세요.
- 해당 사안에 관련된 DHS 또는 보호소 지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이름을 기재하세요.

DHS에서는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장애가 있는 인물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및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